

대 만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	---------------

(2015년 10월 8일)
(aT 홍콩지사- 타이베이 사무소)

구 분	핵심 내용
I 통관 II 검역√ III 라벨링	한국산 배추 잔류농약허용치 초과로 인해 수입전수검사 시행

항 목	핵심 내용				
검역/일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10월 2일 “한국산 배추에 대한 전수검사”공고를 하였고 각 관련 기관 공문 송부함 ○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근거 공문</td> <td>FDA 北字第1042003412號</td> </tr> <tr> <td>관련 품목</td> <td>한국 배추 전체(수입분류코드 : 0704.90.10.00.8)</td> </tr> </table>	근거 공문	FDA 北字第1042003412號	관련 품목	한국 배추 전체(수입분류코드 : 0704.90.10.00.8)
	근거 공문	FDA 北字第1042003412號			
	관련 품목	한국 배추 전체(수입분류코드 : 0704.90.10.00.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공고 내용</td> <td> - 한국에서 수입된 배추(0704.90.10.00.8)은 최근 6개월간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불합격 건이 총 11건 발견되는 등 불합격을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산 수입 배추에 한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식품업자는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한다 ; 상품 내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처리를 한다. 관리기관의 통보를 위반한 업체는 동법 제47조에 의거 처분한다 </td> </tr> </table>	공고 내용	- 한국에서 수입된 배추(0704.90.10.00.8)은 최근 6개월간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불합격 건이 총 11건 발견되는 등 불합격을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산 수입 배추에 한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식품업자는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한다 ; 상품 내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처리를 한다. 관리기관의 통보를 위반한 업체는 동법 제47조에 의거 처분한다		
	공고 내용	- 한국에서 수입된 배추(0704.90.10.00.8)은 최근 6개월간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불합격 건이 총 11건 발견되는 등 불합격을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산 수입 배추에 한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식품업자는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한다 ; 상품 내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처리를 한다. 관리기관의 통보를 위반한 업체는 동법 제47조에 의거 처분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전수검사 실시 기한</td> <td>2015. 10. 5 ~ 2016. 4. 4(수입일 기준)</td> </tr> </table>	전수검사 실시 기한	2015. 10. 5 ~ 2016. 4. 4(수입일 기준)		
	전수검사 실시 기한	2015. 10. 5 ~ 2016. 4. 4(수입일 기준)			
시사점 및 대처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은 수입 검역 시 농약잔류허용량 표준 규정량을 초과하였거나 미 규정된 농약이 검출 될 경우 전량 반송 및 폐기처리 되며, 2015.4.17~10.17(수입일 기준)까지 한국산 배추에 관한 강화 샘플링 수입 검사율(20~50% 샘플링 검사 확율)이 적용되고 있었음. 그 강화샘플링 기간 내 11건 이상이 밀집하게 적발되어 대만 FDA는 10월 5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전수검사 시행 공고를 함 ○ 전수검사 기간 내 지속적인 농약문제 발생 시 한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중단도 될 가능성 높음 ○ 대만은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해 수요가 높은 시기이나 강화된 수입 검사로 인해 수입 업체들이 최근 수입 기피 또는 감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임. 대만 최근 농약잔류허용치 기준안 내의 상품만을 선별적 수출하는 등의 국가적 수출관리 요망 					
발표 일자 /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10.2.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홈페이지에 게재됨 http://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2409 =>•農產品管制措施 선택 					

붙임 1)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 공문 첨부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基隆市報驗商業同業公會

104年10月2日
文編號 1042003412

地址：11561 臺北市南港區昆陽街161-2號
聯絡人：楊子親
聯絡電話：02-27878373
傳真：02-27878398
電子信箱：tsuching@fda.gov.tw

受文者：基隆市報驗商業同業公會

發文日期：中華民國104年10月2日
發文字號：FDA北字第1042003412號
類別：普通件
密等及解密條件或保密期限：
附件：

主旨：自104年10月5日起至105年4月4日止(進口日)，自韓國輸入之白菜(貨品分類號列0704.90.10.00.8)，採取逐批查驗，請查照。

說明：

- 一、查自韓國輸入之白菜(貨品分類號列0704.90.10.00.8)於近6個月內檢出農藥殘留不符規定達11批，鑒於產品不合格批數明顯偏高，為確保輸入食品之衛生安全，爰針對自韓國輸入之白菜，採取逐批查驗。
- 二、按食品安全衛生管理法第7條規定，食品業者應實施自主管理，確保食品衛生安全；有發現產品有危害衛生安全之虞時，應立即停止販賣及辦理回收，並通報地方主管機關。違反者，將依同法第47條處分。惠請貴公會轉知所屬會員遵照辦理。

正本：台灣省進出口商業同業公會聯合會、台北市進出口商業同業公會、高雄市進出口商業同業公會

副本：基隆市報驗商業同業公會、基隆市報關商業同業公會、台北市報關商業同業公會、台中市報關商業同業公會、高雄市報關商業同業公會

104/10/2
15:29:35